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8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차감 (최은석의원안)	2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18.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차감 (최은석의원안)

현 행	최은석 의원안
☐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5조)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 정평가 수수료 - <신 설>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 정평가 수수료 - <u>신고대행 수수료</u>
☐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5조)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액 - 감 정평가 수수료 - <신 설>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액 - 감 정평가 수수료 - <u>신고대행 수수료</u>

* 최은석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7)

☐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가 사용하는 비용이 세액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물적 상속공제금액과 감정평가수수를 제한 금액인 상속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증여세¹⁾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증여공제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됨.

1) 합산배제 증여재산 외의 일반 증여의 경우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 납부세액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전문성을 갖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를 대행하게 되면, 복잡한 상속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신고서의 오류 검토와 보정 요청 등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신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다면, 공제가능한 신고대행 수수료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최저한(5억원) 제도로 대다수 상속인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세되지 않거나³⁾, 그 계산이 어렵지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않아 세무대리인의 신고대행 필요성이 높지 않은 반면,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특례 등 다소 복잡한 공제를 적용받으
려는 자산가에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보다 필요하고,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세무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상담 등 비용의 일부가 ‘신
고대행 수수료’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가 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을 공제하는 신고세액 공제제
도를 두고 있어, 신고에 소요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고 있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3) 상속세는 정부결정 세액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
저한을 적용하여 면세점 이하인 경우 대다수 과세되지 않음. 2023년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2,545명 중
과세대상은 19,944명(6.8%) 수준임

